



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규정 번호 | 2-5-5 |
| 제정 일자 | 1995. 3. 14. |
| 개정 일자 | 2023. 3. 30. |
| 책임부서/팀·계 | 입학학생처 |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칙 제 9 장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벌결정) ① 총장은 학칙에 의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상벌을 심의한다.

② 포상 및 무기정학 이하에 해당하는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③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포 상

제3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포상을 수 있다.

-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
- ② 선행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- ③ 학교발전과 학생회 운영에 크게 기여한 자
- ④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자

제 3 장 징 계

제 4조 (징계) 징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근신 :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되 강의와 특별지도를 아울러 받게 한다.

② 정학 :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한다.

1. 유기정학 :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로 하되 수강을 정지시키고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.

2. 무기정학 :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강을 정지시키고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. 단, 해별은 15일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.

③ 퇴학 : 학생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퇴학시킬 수 있다.

제5조(징계) 학생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하며 이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.

①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이하의 근신에 처한다.

1. 품행불량자
2. 식당 및 휴게실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
3.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 시 결례한 자
4. 법에 의하여 소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
5. 교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한 자
6.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
7. 교내에서 음주한 자(단, 총장의 허가를 득하고, 지도교수 참석 시 예외)

②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4일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.

1.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중하게 범하거나 재범한 자
 2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한 자(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)
 - 가.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
 - 나. 타인의 답안을 보고 쓰는 자
 - 다. 참조가 금지된 서적노트 등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
 - 라. 컨닝 페이퍼를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
 - 마.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
 3. 교내·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
 4. 음주로 인하여 교내·외에서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
- ③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.
1.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중하게 범하거나 재범한 자
 2.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
 3. 학우에게 집단폭행한 자
 4.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한 자
 5.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계획한 자
 - 가. 사전에 답안을 작성해 놓은 자
 - 나. 대리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
 - 다.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한 자
 - 라.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
 - 마. 감독의 검안을 위조하거나 훼손한 자
 - 바.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
 6. 교내에서 불온 인쇄물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
 7. 사직당국으로부터 실형선고로 집행유예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은 자
- ④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.
1.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중하게 범하거나 재범한 자
 2.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
 3. 교직원의 교권을 심히 침해한 자
 4. 폭행으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힌 자
 5.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
 6.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한 자
 7.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한 자
 8. 학생회비 및 공금을 유용한 자
 9. 사직 당국으로부터 실형선고로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처벌은 받은 자

제6조 징계사항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처벌 일로부터 상실 또는 정지된다.

제7조 총장은 징계당사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① 포상학생은 미행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한다.
- ② 처벌학생은 학과장의 책임 하에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학 내에 게시하며 기타사항은 학생처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입학학생처장 및 담당지도교수는 처벌학생을 선도 감독하여 신속히 개과하도록 노력하며 정학처벌 기간 중의 학생에게는 반성문 제출, 거처의 지정, 출입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

2023.3.30., 2024.3.20.>

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